

# 고 양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065 호】

2014년 04월 11일 (금)

|        |         |
|--------|---------|
| 선<br>람 | 기 관 의 장 |
|        |         |

|     |  |  |  |  |  |  |  |
|-----|--|--|--|--|--|--|--|
| 회 랑 |  |  |  |  |  |  |  |
|-----|--|--|--|--|--|--|--|

## 차 려

### 조 려

|               |                            |    |
|---------------|----------------------------|----|
| 고양시 조례 제1583호 | 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 1  |
| 고양시 조례 제1584호 |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9  |
| 고양시 조례 제1585호 |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 15 |
| 고양시 조례 제1586호 |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 20 |
| 고양시 조례 제1587호 | 고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24 |
| 고양시 조례 제1588호 |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         | 33 |
| 고양시 조례 제1589호 |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 40 |
| 고양시 조례 제1590호 | 고양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 57 |
| 고양시 조례 제1591호 | 고양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         | 63 |
| 고양시 조례 제1592호 |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 81 |

### 고 시

|                   |                                               |    |
|-------------------|-----------------------------------------------|----|
| 고양시 고시 제2014-109호 |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8호)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 94 |
|-------------------|-----------------------------------------------|----|

발행 : 고 양 시

편집 : 공보담당관

(우) 412-70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0(주교동 600) ☎ (031) 8075-2095

공 고

|                      |                                                       |    |
|----------------------|-------------------------------------------------------|----|
| 고양시 공고<br>제2014-567호 | 도시계획시설(경부고속철도 서울차량기지·정비창 시설 내<br>직장어린이집 건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 95 |
| 고양시 공고<br>제2014-568호 | 도시계획시설(소로1-165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 96 |
| 고양시 공고<br>제2014-569호 | 제2차 고양시 교통안전기본계획 확정공고                                 | 97 |

고양시의회 제18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공포한다.

## 고 양 시 장 최 성 인

2014년 4월 11일

고양시조례 제1583호

### 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양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발명자의 권리를 보장하며 연구개발 의욕을 향상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무발명”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는 사람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발명자”란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4. “특허등”이란 등록하지 않은 특허·저작·실용신안·디자인·컴퓨터프로그램·품종보호의 지적재산을 말한다.
5. “시유지적재산권”이란 시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저작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컴퓨터프로그램권·품종보호권(이하“특허권등”이라 한다)의 지

적재산권을 말한다.

6. “발명기관의 장”이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이나 부서의 장을 말한다.
7.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시유지적재산권이나 특허등을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이나 저작권의 양도
  - 나. 시유지적재산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이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또는 저작권의 양도
  - 다. 특허등을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나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과 저작권의 양도계약
8. “처분수입금”이란 시유지적재산권이나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제3조(직무발명의 권리승계)** ① 시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등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이거나 승계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경우에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가 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을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등을 포함한다.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시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발명의 신고)**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발명의 승계결정)** ① 제5조와 제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서류를 심사하여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그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발명기관의 장 및 발명자에게 통지하되,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발명자는 시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제7조(특허등의 출원)** 제6조에 따라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시장은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등의 출원을 하여야 하며 특허등의 출원 절차는 발명기관의 장이 이행한다.

**제8조(발명자의 특허등 출원)** ① 발명자는 제6조에 따라 시장이 특허등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등의 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그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등의 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발명자가 특허등의 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5조에 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특허권등의 등록)** 시장은 특허등을 출원 중인 직무발명이 특허권등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시의 명의로 특허권등의 재산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특허등록 등의 통지)** 시장은 제9조에 따라 특허권등의 등록을 마친 후 시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등록보상금의 지급)** ① 제9조에 따른 특허권등에 대하여는 매 권리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 100만원

2. 실용신안권 : 50만원
3. 디자인권 : 30만원
4. 저작권 : 50만원
5. 컴퓨터프로그램 : 50만원
6. 품종보호권 : 10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한다.

**제12조(처분의 원칙)** ① 시유지적재산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거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시유지적재산권의 처분은 유상 처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업인 소득증대, 그 밖에 시정시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상 처분할 수 있다.

**제13조(처분의 방법 등)** ① 시유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② 시유지적재산권의 매각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시유지적재산권의 내용상 그 실시예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 입찰로 할 수 없는 경우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국가기관의 행위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사람에게 해당 시유지적재산권을 매각하는 경우
4. 전용실시권자의 사용설정기간이 만료된 후 그 해당 전용실시권자의 계속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을 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을 할 여유가 없는 경우
6. 개별법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7. 경쟁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4조(등록전의 처분)** ① 시장은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지적재산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그 해당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은 제12조와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시장은 시유지적재산권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는 예정가격의 결정, 기간, 조건 등에 관해 발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발명기관의 장에 대해서는 예정가격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처분보상금의 지급)** ① 시장은 시유지적재산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거나 특허등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이하 “시유지적재산권등”이라 한다)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유지적재산권등을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명자에게 처분보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발명기관의 장에게 그 근거가 되는 처분의 증명서류를 제출 받아야 한다.

**제17조(처분대금의 처리)** ① 시유지적재산권 등의 처분대금은 시 세입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처분대금 중 일부를 특허와 연관된 사항에 사용 할 수 있다.

**제18조(보상금의 지급시기 등)** ①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처분보상금의 그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1조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시유특허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2. 제16조에 따른 처분보상금은 처분수입금이 납부되거나 무상 처분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연도

②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 지급하여야 한다.

③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1조와 제16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

④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 해당 발명자의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보상금의 불반환)** 사유지적재산권의 권리자와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위·도용 등 부정한 행위와 재판 등에 따라 무효가 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심의위원회)** ①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고양시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1. 직무발명의 시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2. 자유발명의 시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1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고양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21조(자유발명의 권리승계)**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시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는 이 조례를 준용한다.

**제22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한 경우 그 상대방이 그 발

명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23조(비밀유지)** 발명자나 시유지적재산권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 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4조(수당 및 여비)** 시장은 제20조에 따라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고양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등에 관한 규정」을 「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장이 한 직무발명의 승계결정, 특허등의 출원, 특허권등의 등록·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처분한 시유지적재산권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소 관 과       |                | 정책기획담당관                  |
|-------------|----------------|--------------------------|
| 입<br>안<br>자 | 과 장<br>직위·성명   | 정책기획담당관<br>박 동 길         |
|             | 담 당<br>직위·성명   | 정책평가팀장<br>김 승 균          |
|             | 담 당 자<br>성명·전화 | 김 희 택<br>(031-8075-2162) |

# 고양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정

## □ 제정이유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였을 경우 「발명진흥법」 제10조에 따라 고양시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는 시가 승계하여 특허권을 시 소유로 하고, 승계되었을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여,
-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발명에 대한 연구의욕을 고취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여 고양시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시는 직무발명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하고,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제3조, 제4조)
- 등록보상금은 매 권리당 특허권 100만원, 실용신안권 50만원, 디자인권 30만원, 저작권 50만원, 컴퓨터프로그램 50만원, 품종보호권 100만원을 발명자에게 지급함을 규정 (제11조)
- 시유지적재산권의 유상처분 및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도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함. (제16조)
- 시유지적재산권의 권리 승계, 보상금 지급 등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양시 직무발명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고양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함. (제20조)

고양시의회 제18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 고 양 시 장 최 성 인

2014년 4월 11일

고양시조례 제1584호

###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통·반관할구역 중 관산동 6통 1~2반, 화정1동 13통 1반, 행신1동 20통 1~4반을 다음과 같이하고, 일산1동 7통 4,6,7반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동 30통 1~13반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동명<br>(행정동) | 통  | 반  | 관할구역                             |
|-------------|----|----|----------------------------------|
| 관산동         | 6  | 1  | 관산동 1015 더퍼스트프라임 101동            |
|             |    | 2  | 관산동 1015 더퍼스트프라임 102동            |
| 화정1동        | 13 | 1  | 화정동 868 달빛마을 401동                |
| 행신1동        | 20 | 1  | 행신동 650 행신3차 에스케이뷰아파트 301동, 302동 |
|             |    | 2  | 행신동 650 행신3차 에스케이뷰아파트 303동, 304동 |
|             |    | 3  | 행신동 650 행신3차 에스케이뷰아파트 305동, 306동 |
|             |    | 4  | 행신동 650 행신3차 에스케이뷰아파트 307동       |
| 일산1동        | 7  | 4  | " 201동 103호~2703호                |
|             |    | 6  | " 202동 103호~2503호                |
|             |    | 7  | " 203동 101호~2202호                |
|             | 30 | 1  | 일산동 1945 일산푸르지오 101동             |
|             |    | 2  | 일산동 1945 일산푸르지오 102동             |
|             |    | 3  | 일산동 1945 일산푸르지오 103동             |
|             |    | 4  | 일산동 1945 일산푸르지오 104동             |
|             |    | 5  | 일산동 1945 일산푸르지오 105동             |
|             |    | 6  | 일산동 1945 일산푸르지오 106동             |
|             |    | 7  | 일산동 1945 일산푸르지오 107동             |
|             |    | 8  | 일산동 1945 일산푸르지오 108동             |
|             |    | 9  | 일산동 1945 일산푸르지오 109동             |
|             |    | 10 | 일산동 1945 일산푸르지오 110동             |
|             |    | 11 | 일산동 1945 일산푸르지오 111동             |
|             |    | 12 | 일산동 1945 일산푸르지오 112동             |
|             |    | 13 | 일산동 1945 일산푸르지오 113동             |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관과         |                  | 인적자원담당관            |
|-------------|------------------|--------------------|
| 입<br>안<br>자 | 담 당 관<br>성 명     | 인적자원담당관<br>명 재 성   |
|             | 팀 장<br>성 명       | 조직교육팀장<br>정 재 선    |
|             | 담 당 자<br>성명 · 전화 | 조은정<br>(8075-2399) |

# 신·구조문대비표

## 1. 관산동 : 단독필지에 주상복합아파트 재건축으로 해당 통·반 관할구역 조정

- 조정내용 : 6통 1~2반의 관할구역 조정

| 현행           |   |   |                                                                                  | 개정안          |   |   |                       |
|--------------|---|---|----------------------------------------------------------------------------------|--------------|---|---|-----------------------|
| 통 반 관 할 구 역  |   |   |                                                                                  | 통 반 관 할 구 역  |   |   |                       |
| 동 명<br>(행정동) | 통 | 반 | 관 할 구 역                                                                          | 동 명<br>(행정동) | 통 | 반 | 관 할 구 역               |
| 관산동          | 6 | 1 | 관산동중<br>178-4, 18-10, 178-12, 178-13,<br>178-43, 178-44, 178-23, 179-4,<br>179-5 | 관산동          | 6 | 1 | 관산동 1015 더퍼스트프라임 101동 |
|              |   | 2 | 관산동중<br>178-1, 178-18, 178-15, 178-28,<br>178-49, 178-51, 178-52                 |              |   | 2 | 관산동 1015 더퍼스트프라임 102동 |

## 2. 화정1동 : 오류지번 정정

- 조정내용 : 13통 1반 내 오류지번 정정

| 현행           |    |   |                          | 개정안          |    |   |                          |
|--------------|----|---|--------------------------|--------------|----|---|--------------------------|
| 통 반 관 할 구 역  |    |   |                          | 통 반 관 할 구 역  |    |   |                          |
| 동 명<br>(행정동) | 통  | 반 | 관 할 구 역                  | 동 명<br>(행정동) | 통  | 반 | 관 할 구 역                  |
| 화정1동         | 13 | 1 | 화정동 <u>869</u> 달빛마을 401동 | 화정1동         | 13 | 1 | 화정동 <u>868</u> 달빛마을 401동 |

## 3. 행신1동 : 오류지번 정정

- 조정내용 : 20통 1~4반 내 오류지번 정정

| 현행           |    |   |                                              | 개정안          |    |   |                                            |
|--------------|----|---|----------------------------------------------|--------------|----|---|--------------------------------------------|
| 통 반 관 할 구 역  |    |   |                                              | 통 반 관 할 구 역  |    |   |                                            |
| 동 명<br>(행정동) | 통  | 반 | 관 할 구 역                                      | 동 명<br>(행정동) | 통  | 반 | 관 할 구 역                                    |
| 행신1동         | 20 | 1 | 행신동 <u>650-8</u> 행신3차<br>에스케이뷰아파트 301동, 302동 | 행신1동         | 20 | 1 | 행신동 <u>650</u> 행신3차 에스케이뷰아파트<br>301동, 302동 |
|              |    | 2 | 행신동 <u>650-8</u> 행신3차<br>에스케이뷰아파트 303동, 304동 |              |    | 2 | 행신동 <u>650</u> 행신3차 에스케이뷰아파트<br>303동, 304동 |
|              |    | 3 | 행신동 <u>650-8</u> 행신3차<br>에스케이뷰아파트 305동, 306동 |              |    | 3 | 행신동 <u>650</u> 행신3차 에스케이뷰아파트<br>305동, 306동 |
|              |    | 4 | 행신동 <u>650-8</u> 행신3차<br>에스케이뷰아파트 307동       |              |    | 4 | 행신동 <u>650</u> 행신3차 에스케이뷰아파트<br>307동       |

4. 일산1동 : 기존 아파트 누락 호수 정리 및 신규 아파트 입주에 따른 통·반 설치

- 조정내용 : 7통 4,6,7반의 관할구역 정리 및 30통 1~13반 신규 설치

| 현행          |   |      |                           | 개정(안)       |   |    |                             |
|-------------|---|------|---------------------------|-------------|---|----|-----------------------------|
| 통반관할구역      |   |      |                           | 통반관할구역      |   |    |                             |
| 동명<br>(행정동) | 통 | 반    | 관할구역                      | 동명<br>(행정동) | 통 | 반  | 관할구역                        |
| 일산1동        | 7 | 4    | " 201동 103호~ <u>2004호</u> | 일산1동        | 7 | 4  | " 201동 103호~ <u>2703호</u>   |
|             |   | 6    | " 202동 103호~ <u>1804호</u> |             |   | 6  | " 202동 103호~ <u>2503호</u>   |
|             |   | 7    | " 203동                    |             |   | 7  | " 203동 <u>101호~2202호</u>    |
|             |   | <신설> |                           | 30          |   | 1  | <u>일산동 1945 일산푸르지오 101동</u> |
|             |   | <신설> |                           |             |   | 2  | <u>일산동 1945 일산푸르지오 102동</u> |
|             |   | <신설> |                           |             |   | 3  | <u>일산동 1945 일산푸르지오 103동</u> |
|             |   | <신설> |                           |             |   | 4  | <u>일산동 1945 일산푸르지오 104동</u> |
|             |   | <신설> |                           |             |   | 5  | <u>일산동 1945 일산푸르지오 105동</u> |
|             |   | <신설> |                           |             |   | 6  | <u>일산동 1945 일산푸르지오 106동</u> |
|             |   | <신설> |                           |             |   | 7  | <u>일산동 1945 일산푸르지오 107동</u> |
|             |   | <신설> |                           |             |   | 8  | <u>일산동 1945 일산푸르지오 108동</u> |
|             |   | <신설> |                           |             |   | 9  | <u>일산동 1945 일산푸르지오 109동</u> |
|             |   | <신설> |                           |             |   | 10 | <u>일산동 1945 일산푸르지오 110동</u> |
|             |   | <신설> |                           |             |   | 11 | <u>일산동 1945 일산푸르지오 111동</u> |
|             |   | <신설> |                           |             |   | 12 | <u>일산동 1945 일산푸르지오 112동</u> |
|             |   | <신설> |                           |             |   | 13 | <u>일산동 1945 일산푸르지오 113동</u> |

# 고양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 □ 개정이유

- 지역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통·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기존 관할 구역 내 오류사항을 재정비하여 행정효율을 제고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아파트 완공 지역의 주민입주에 따른 신규 통·반 설치(일산1동)
- 단독필지에 주상복합아파트 재건축으로 관할구역 조정(관산동)
- 오류지번 정정 및 누락된 아파트 호수 정리(화정1동, 행신1동, 일산1동)
- 세부 조정내역 : 1개통 13개반 증설

※ 고양시 통·반 현황 : 928통 5,780반(조정 전) → 929통 5,793반(조정 후)

| 구 분  | 현 행 |     | 증 감 |    | 조 정 후 |     | 통·반 변경사유                                                                                                                                                   |
|------|-----|-----|-----|----|-------|-----|------------------------------------------------------------------------------------------------------------------------------------------------------------|
|      | 통   | 반   | 통   | 반  | 통     | 반   |                                                                                                                                                            |
| 합계   |     |     | 1   | 13 |       |     |                                                                                                                                                            |
| 관산동  | 40  | 200 | -   | -  | 40    | 200 | ○ <a href="#">관할구역 조정</a><br>- 관산동 제1차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으로 단독 필지가 주상복합아파트(더퍼스트프라임)로 재건축(2개동 272세대) 되어 해당 통·반 관할구역 조정                                             |
| 화정1동 | 36  | 176 | -   | -  | 36    | 176 | ○ <a href="#">오류지번 정정</a><br>- 달빛마을 4단지의 오류지번 정정                                                                                                           |
| 행신1동 | 20  | 106 | -   | -  | 20    | 106 | ○ <a href="#">오류지번 정정</a><br>- 행신3차 에스케이뷰아파트의 오류지번 정정                                                                                                      |
| 일산1동 | 29  | 220 | 1   | 13 | 30    | 233 | ○ <a href="#">관할구역 조정</a><br>- 유진스웰아파트 201동~203동의 누락된 호수 정리<br>○ <a href="#">1개통 13개반 설치</a><br>- 탄현주공재건축사업의 완공으로 일산푸르지오 신규입주 (13개동 589세대)에 따른 1개통 13개반 설치 |

고양시의회 제18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 고 양 시 장 최 성 인

2014년 4월 11일

고양시조례 제1585호

###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3절 종업원분”을 신설하고 제9조의1 및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3절 종업원분

제9조의1(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 총액의 1천분의5로 한다.

제9조의2(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 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4장 지방소득세(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삭제한다.

제17조의 “산출세액” 을 “부과세액” 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소관과         |                | 세 정 과                |
|-------------|----------------|----------------------|
| 입<br>안<br>자 | 과 장<br>성 명     | 세정과장<br>이 현 옥        |
|             | 팀 장<br>성 명     | 세원관리팀장<br>이 종 을      |
|             | 담 당 자<br>성명·전화 | 이 종 을<br>(8075-2240) |

#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      |                |  |
|------------------------------------------------------------------------------------------------------------------------------------------------------------|--------------------------------------------------------------------------------------------------------------------------------------------------------------------------------------------------------------------------------------------------------------------------------------------------------------------------------------------------------------------------------------------------------|----|------|----------------|------|----------------|--|
| <p>〈신설〉</p> <p>〈신설〉</p> <p>〈신설〉</p>                                                                                                                        | <p>제3절 종업원분</p> <p>제9조의1(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5로 한다.</p> <p>제9조의2(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 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 하였을 때</li> <li>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li> <li>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li> <li>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li> </ol> |    |      |                |      |                |  |
| 제4장 지방소득세                                                                                                                                                  | 〈삭제〉                                                                                                                                                                                                                                                                                                                                                                                                   |    |      |                |      |                |  |
| 제1절 소득분                                                                                                                                                    | 〈삭제〉                                                                                                                                                                                                                                                                                                                                                                                                   |    |      |                |      |                |  |
| 제10조(세율) 법 제89조에 따른 소득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 〈삭제〉                                                                                                                                                                                                                                                                                                                                                                                                   |    |      |                |      |                |  |
| <table border="1"> <tr> <th>구분</th><th>세율</th></tr> <tr> <td>소득세분</td><td>소득세액의 100분의 10</td></tr> <tr> <td>법인세분</td><td>법인세액의 100분의 10</td></tr> </table> | 구분                                                                                                                                                                                                                                                                                                                                                                                                     | 세율 | 소득세분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법인세분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  |
| 구분                                                                                                                                                         | 세율                                                                                                                                                                                                                                                                                                                                                                                                     |    |      |                |      |                |  |
| 소득세분                                                                                                                                                       | 소득세액의 100분의 10                                                                                                                                                                                                                                                                                                                                                                                         |    |      |                |      |                |  |
| 법인세분                                                                                                                                                       | 법인세액의 100분의 10                                                                                                                                                                                                                                                                                                                                                                                         |    |      |                |      |                |  |

| 현행                                                                                                       | 개정안                                                    |
|----------------------------------------------------------------------------------------------------------|--------------------------------------------------------|
| 제2절 종업원분                                                                                                 | <삭제>                                                   |
| 제11조(세율)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종업원 급여총액의 1천분의5로 한다.                                                   | <삭제>                                                   |
| 제12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 무자는 종업원 수, 급여총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삭제>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 1. 사업소를 새로이 신설 하였을 때                                                                                     |                                                        |
|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                                                        |
|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                                                        |
|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                                                        |
| 제17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제17조(납기) .....<br>.....부과세액<br>.....<br>.....<br>..... |

# 고양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 □ 개정이유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2153호, 2014. 1. 1. 공포·시행)에 따라 위임 사항을 반영한 시세 조례를 법률에 맞게 정비하여 시세 부과·징수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이 “주민세” 종업원분으로 세목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제9조의1 및 제9조의2 신설, 제11조 및 제12조 삭제)
- 지방소득세의 세율이 변경되고 조례에 따른 세율적용(탄력세율)이 부칙 제1조 단서에 의해 2017년 1월 1일부터 가능함에 따라 탄력세율 규정을 삭제함. (제10조 삭제)
- 재산세 일괄부과·징수의 대상을 “산출세액”에서 “부과세액”으로 개정(제17조)

고양시의회 제18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 고 양 시 장 최 성 인

2014년 4월 11일

고양시조례 제1586호

###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6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 관 과 |                | 회 계 과                   |
|-------|----------------|-------------------------|
| 입안자   | 과 장<br>직위·성명   | 회계과장<br>노 양 호           |
|       | 팀 장<br>직위·성명   | 경리팀장<br>최 응 근           |
|       | 담 당 자<br>성명·전화 | 오 형 근<br>(031)8075-2492 |

## 신구조문 대비표

| 현<br>행                                                                                                                                                                                                                                                                 | 개<br>정                                                                                                                                                                                                       |
|------------------------------------------------------------------------------------------------------------------------------------------------------------------------------------------------------------------------------------------------------------------------|--------------------------------------------------------------------------------------------------------------------------------------------------------------------------------------------------------------|
| 제6조(생략)<br>1.~7. (생략)<br>8. <u>별표 1</u>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계약직 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으로, "일반계약직 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 "전문계약직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한다. | 제6조(현행과 같음)<br>1.~7. (현행과 같음)<br>8. <u>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u> .....<br>.....<br>.....<br>.....<br>.....<br>「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br>..... 임기제 공무원”, “전문임기제 공무원”.....<br>..... 임기제 공무원”..... |

##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

### □ 개정이유

-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임기제 공무원 제도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시행('13. 12. 12)에 따른 변경 사항 반영

### □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법」 개정(직종개편)에 따라 관련 문구 수정

※ “계약직공무원규정 → 공무원임용령”, “계약직공무원 → 임기제공무원”으로 변경

고양시의회 제18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 고 양 시 장 최 성 인

2014년 4월 11일

고양시조례 제1587호

### 고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도시로 성장·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제화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한 사람, 물자,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발전시키고자 하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3. “국제회의 등”이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로서 「국제회의

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정한 회의 뿐만 아니라 3개국 이상의 국가 대표가 참가하는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 회의와 행사를 말한다.

4. “자매도시”란 외국도시와 행정·사회·경제·문화·관광·체육 등 국제교류 협력을 위하여 친선 관계를 맺은 도시를 말한다.
5. “우호교류도시”란 외국도시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은 도시로 자매결연 체결의 전 단계인 도시를 말한다.
6. “명예국제협력관”이란 국제교류 도시 또는 교류 예정도시 내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으로서 국제교류협력 및 통상활동 강화를 위하여 위촉된 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목표)**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세계화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로서의 역량강화
2.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물적·제도적 토대의 구축
3. 통상진흥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
4. 세계도시와 교류 협력하는 신한류 국제문화관광도시 구현
5. 시민의 국제적 역량 증진 및 국제 문화시민 육성

**제4조(적용범위)**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의 책무)**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환경, 보건 등 각 분야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국제화촉진 및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제6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제화 전략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국제도시 이미지 제고 및 세계화 전략
3. 해외 자매도시 및 우호교류도시 교류 전략
4. 민간차원의 각 분야별 교류 활성화 방안 및 국제 민간교류 네트워크 구축
5. 국제 통상 및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기여 방안
6. 각종 국제대회의 유치 전략 및 국제기구 가입
7.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8.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9. 그 밖에 국제화촉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7조(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시장은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외 교류활동 주관 지원 및 참가
2. 시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활동지원
3. 해외봉사 또는 문화·예술·체육·경제·복지·교육 등의 분야에서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 및 참가
4. 교류도시와의 목적과 실리추구를 위한 상호파견
5. MICE, 국제통상, 관광, 방송영상산업 활성화 사업
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사업에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비영리 목적의 국제교류 사업이 시와 교류관계의 외국도시 또는 단체와의 교류사업이 포함된 경우

② 국외여비의 경우 지원기준은 「공무원여비규정」 6급 기준에 따른다.

**제9조(국제교류협력 및 해외비즈니스 강화)** ① 시장은 글로벌 시장개척을

통한 해외 마케팅 활동 강화와 해외통상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실질적인 통상진흥시책을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자매도시는 물론 전 세계 개발도상국의 도시와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국제회의 등 유치)** 시장은 국제회의 등을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유치 가능성 투자 비용, 연관 파급효과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재해구호 지원)** 시장은 국제사회에서의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외국도시가 지진, 태풍, 해일, 폭우 등 자연 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한 경우 의료지원반 등을 파견하거나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 국제화 인재 육성)** 시장은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소속 공무원이 국제적으로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별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제13조(교류협력 사업 위탁)** 시장은 민간외교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제교류협력사업을 국제 친선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등)** 시장은 국제화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내·외국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 제3장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체결

**제15조(협정체결 도시선정)**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외국도시는 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하며, 협정체결 외국도시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되, 시 재정여건과 교류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범위에서 정한다.

**제16조(사전검토)** ① 시장은 외국도시로부터 협정체결 제의를 받거나 시가 외국도시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여건과 외교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도시의 지역여건 검토에 필요한 각종 관계 자료를 수집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1. 면적·인구 및 행정·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
2. 산업·지역특성의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제17조(사전교류)** 시장은 제16조 제1항에 따른 협정체결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주민·의회·학계·사회단체 대표 등을 상호교환 초청하여 사전교류를 할 수 있다.

**제18조(동의 및 통보)** ① 결연 대상지역으로 선정된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은 사전에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외국도시와의 우호교류 협정은 체결 후 그 결과를 시의회에 통보한다.

**제19조(협정체결의 효력)** 협정의 효력은 공통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이 합의된 문서에 양 도시를 대표하는 사람이 서명함으로써 발생된다.

**제20조(사후관리)** 시장은 협정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다방면에 대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관련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정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21조(협정의 취소)** 시장은 협정체결 후 양 도시간의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두절 및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체결된 협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자매도시와의 협정을 취소할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제4장 명예국제협력관 위촉·운영

**제22조(위촉)** 고양시 명예국제협력관(이하 “국제협력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 이 때에는 성별 균형있는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한인회 또는 재외동포회의 임원
2. 무역 또는 기업체 임원 등 경제인
3. 그 밖에 주재국에서 덕망이 있고 통상 및 국제교류협력에 경험이 많은 자

**제23조(임무)** 국제협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적극 협력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2. 국제통상·문화·예술·관광·체육 등의 교류에 관한 사항
3. 시정에 대한 홍보요원으로서 역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제24조(임기 및 해촉)** ① 국제협력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제협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국제협력관으로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위촉원인이 소멸된 때

**제25조(품위유지)** 국제협력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시를 대표하는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6조(경비 지원)** ① 국제협력관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임무 수행을 위하여 국·내외 출장 시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국제협력관이 제23조에 따른 업무추진을 위해 자료송부, 통신료 등에 소요된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5장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

**제27조(설치)** ① 시장은 국제교류협력과 통상활동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자매결연·우호교류 도시 및 그 밖의 외국도시에 고양시 해외사무소(이하 “해외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해외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할 경우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8조(기능)** 해외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정의 대외적 홍보
2. 경제·사회·문화·관광 등 국제교류협력 추진 및 지원
3. 투자유치·통상·산업기술 정보수집 제공
4. 시의 공산품·농수축산물 상품전시 홍보 및 수출상담 지원
5. 그 밖의 국제교류협력 및 통상활동 증진에 관련되는 업무

**제29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해외사무소의 설치 운영과 관련된 사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정부 투자기관 현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사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고려하여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만료 60일 전까지 수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해외사무소위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30조(근무자 파견)** ① 시장은 해외사무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외사무소에 파견될 사람의 파견방법 및 근무요령 등은 별도로 정한 사항 이외에 「고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양시와 외국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 상호협정에 관한 조례」 및 「고양시 명예 국제협력관 운영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와 외국도시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자매결연관계에 대한 행위와 위촉된 국제협력관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 소 관 과  |                  | 마이스산업육성과               |
|--------|------------------|------------------------|
| 입<br>안 | 과 장<br>직위 · 성명   | 마이스산업육성과장<br>김 석 진     |
|        | 팀 장<br>직위 · 성명   | 국제협력팀장<br>윤 희 성        |
| 자      | 담 당 자<br>직위 · 성명 | 장 은 옥<br>031-8075-3526 |

# 고양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

## □ 제정이유

- 인구 100만을 바라보는 국제도시로서 외국도시와의 자매결연체결 등에 필요한 기준, 사후관리, 교류사업의 지원과 위탁 등 국제화 및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일련의 체계화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고양시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시경쟁력과 비전을 가진 국제도시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함.
- 우리 시와 외국도시와의 국제교류 협력, 국제통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외사무소 설치 규정을 신설함.
- 기존의 개별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고양시와 외국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 상호협정에 관한 조례」와 「고양시 명예국제협력관 운영조례」를 통합하여 적극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이 필요함.

## □ 주요내용

-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중장기 계획수립 명시(제6조)
- 교류협력사업의 범위 및 지원 근거 명시(제7조~제8조)
-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체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15조~제21조)
- 명예국제협력관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22조~제26조)
- 해외사무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제27조~제30조)
- 다른 조례의 폐지(부칙 제2조)
  - 「고양시와 외국지방자치단체 간 자매결연 등 상호협정에 관한 조례」
  - 「고양시 명예국제협력관 운영 조례」

고양시의회 제18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를 공포한다.

## 고양시장최성인

2014년 4월 11일

고양시조례 제1588호

###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상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경제활성화 및 관광상품산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이하 “관광상품”이라 한다)이란 고양시 명의로 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한 상표를 활용하여 제작한 상품을 말한다.
2. “상표권”이란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3.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이란 관광상품 중 브랜드 관광상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우수성이 인정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사업)**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상품의 개발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관광상품 개발 및 산업 육성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2. 다각적 관광상품 개발 지원 및 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 마련

3.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선정 및 육성방안
4. 상설매장, 박람회 등 판로개척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사항
5. 우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등 관광상품 제작·판매 업체 참여 확대
6. 그 밖에 관광상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제3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 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위원은 관광상품 담당 국장 및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고양시의회 의원,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관광상품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6조(위원회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과 고양시의회 의원,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

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관광상품 제작·판매 업체 신청)** ① 상표를 사용하여 관광상품을 제작·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신청대상은 대표자의 주소 또는 사업장이 관내에 있는 법인, 단체, 개인으로 한다.

**제10조(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지정)**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을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지정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의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전업(轉業)·폐업 등으로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 할 경우
2. 법에 위반되거나 상표 관리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발생시킨 경우
3. 지정받지 아니한 품목에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 상표를 사용 하는 경우
4.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지정이 취소되면 이미 제작·유통된 상품을 회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여야 한다.

**제12조(우수 참여 부서 및 우수 관광상품 제작·판매 업체 시상)** ① 시장은 산하기관을 포함하여 구매실적이 높거나 아이디어 제안 등에 활발히 참여한 부서 또는 기관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연매출총액 또는 관광상품별 매출 실적에 따라 우수 관광상품 제작·판매 업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1. 상표 활용 디자인 개발
2. 상품의 품질 향상
3. 특허출원, 등록 및 관리

4. 그 밖에 우수관광상품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2조의 우수 관광상품 제작·판매 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생산업체의 시설 근대화 및 집산화 사업
2. 신제품 개발 및 생산 장려금의 지원
3. 생산기술, 경영, 법률 등의 교육과 자문
4. 상설매장 판매를 위한 서비스 마케팅 인력수급
5. 그 밖에 우수 관광상품 제작·판매 업체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판로개척)**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 브랜드 관광상품과 제12조에서 선정한 우수 관광상품 제작·판매 업체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광상품의 공동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촉진활동
2. 유관기관을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
3. 각종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특별행사 참가
4. 각종 전시 판매장 또는 상설매장을 통한 판매 확대
5. 판매 마케팅을 위한 국내외 시장조사 및 유통실태조사
6. 그 밖에 판로개척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업무 위탁)** 시장은 관광상품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상품 상설매장 설치, 운영
2. 관광상품 평가 또는 우수 관광상품 제작·판매 업체 선정
3. 관광상품 개발, 판매, 유통 등 활성화 사업
4. 그 밖에 관광상품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상설매장 운영)** ① 제15조에 따라 상설매장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

자”이라 한다)는 수탁 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기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 하였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관광상품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사용토록 할 경우에는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위탁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

**제1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관리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준용)** 제15조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관부서        |                | 신한류관광과               |
|-------------|----------------|----------------------|
| 입<br>안<br>자 | 과 장<br>직위·성명   | 신한류관광과과장<br>이 재 필    |
|             | 팀 장<br>직위·성명   | 신한류관광팀장<br>박 재 응     |
|             | 담 당 자<br>성명·전화 | 성 남 신<br>(8075-3404) |

#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 육성 조례 제정

## □ 제정이유

-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의 관광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양시가 소유한 상표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고양시 도시 브랜드를 향상시키기 위해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브랜드 관광상품을 산업 활성화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고양시 브랜드 관광상품 사업 범위와 심의위원회 운영 등  
(제3조부터 제9조까지)
- 브랜드 관광상품 제작·판매 업체 신청과 우수 관광상품 지정 등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우수 참여부서와 우수 판매업체 시상, 지원, 판로개척, 업무위탁 등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고양시의회 제18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를 공포한다

## 고 양 시 장 최 성 인

2014년 4월 11일

고양시조례 제1589호

###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법령에 따라 고양시가 성평등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정과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평등 관련법령"이란 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인권보장과 복지 증진, 사회참여 확대 등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
2. "성평등"이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과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성인지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함께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 되도록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과 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평등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고, 여성발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성평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하게 대우받을 권리와 함께 성평등 관련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고, 시의 성평등정책과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며, 남녀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성평등 사회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관내 공공기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고용 및 조직운영과 사업활동에서 성평등 시책을 준수하고 성평등의 촉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성평등정책

**제4조(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평등정책의 기본방향
2. 성평등정책의 목표
  - 가. 성평등의 촉진
  -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 다. 여성의 복지증진
3.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4. 성평등정책에 대한 주요시책
5. 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 방법
6. 여성친화도시 조성
7. 그 밖의 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② 시장은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성평등정책 전담부서 설치 등)** ① 시장은 성평등정책 추진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평등정책 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정책 전담부서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평등 관련사업 추진시 주민 의견 수렴
2. 성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 추진 및 지원
3. 성평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

③ 성평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고, 성평등정책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성평등정책책임관 지정 등)** ① 시장은 부시장을 성평등정책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담당관·과장을 성평등정책실무책임관(이하 “실무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

② 책임관은 성평등의 관점에서 시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성인지력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성평등정책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를 총괄·조정한다.

③ 실무책임관은 소관 부서의 실질적인 성평등정책 업무를 맡아서 주관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소관 부서의 연도별 성평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 수립
2. 소관 성평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한 추진실적

## 점검

3. 소관 성평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상황 정리보고
4.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소관 부서의 제도개선
5. 정책의 분석·평가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추진상황 및 정책개선 점검
6. 그 밖에 책임관이 부여하는 업무 추진

**제7조(성평등정책조정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및 점검·평가하기 위하여 책임관 밑에 고양시성평등정책조정회의(이하 “조정회의”라 한다)를 둔다.

1. 연도별 성평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2개부서 이상에 관련되는 성평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
3. 성평등정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조정회의 구성)** ① 조정회의는 의장·부의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부시장, 부의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며, 나머지 위원은 국·소장으로 한다.

③ 조정회의의 간사는 성평등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9조(회의 등)** ① 조정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통계·자료의 성별표기)** ① 시장은 성평등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시와 공공기관, 수탁기관 또는 보조금을 받고 있는 시설 및 단체에서 조사·관리하는 각종 통계와 자료에 대하여 성별을 구분하여 표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최소 3년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시장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여성주간사업)** 시장은 법 제14조 및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여성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사업주관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및 자문기구를 구성할 때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여성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조정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공직 등에의 성평등 촉진)** ① 시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직 기회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에 따른 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여성의 관리직 진출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내 여성의 모집 및 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성평등 의식의 제고)** 시장은 공공기관 및 가정·학교·사회교육에서 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사업을 개발·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6조(성차별·성희롱 개선 등)** ①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문서작성과 회의 및 근무 등 일상생활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국·소·담당관·과·동장은 의무교육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성차별이나 성희롱 사례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2. 성희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 수립
3.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를 위한 공식 창구의 마련
4. 성희롱 고충담당자 지정
5. 자체 성희롱 예방지침의 마련
6. 그 밖에 자체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치

**제17조(경제활동의 지원)** ① 시장은 여성의 취업·창업·기업 활동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성기업인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에서 여성기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제18조(일·가정 양립 지원)** 시장은 여성과 남성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2. 방과 후 아동 보육의 활성화
3.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채용·운영의 활성화
4.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5.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9조(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성평등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법 제3조제2호 및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전국단위의 단체일 경우에는 시지부 또는 지회에 한한다)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다만, 정당, 친목단체 등은 제외한다.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은 법인
3. 그 밖의 성평등과 여성 권익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단체

③ 정부 및 경기도 출연기관과 민간연구기관이 시의 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도시기반시설)** ① 시장은 도시기반시설·공공시설·새로운 택지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분석평가(이하 “분석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성평등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새로운 주거단지 조성, 주택, 건축, 도로시설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보행과 대중교통의 안정성 및 편의성
2.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3. 가정과 직장 양립 환경조성
4.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공간 조성

**제21조(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2. 범죄 및 위험 예방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22조(가족친화공동체 조성 지원)**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를 조성하고 주민 역량증진과 마을, 가족, 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지역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 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분석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성평등을 목표로 하는 지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새로운 택지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때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여성친화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정책이 제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고양시 여성친화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참여하는 담당 국·소장, 시의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관련 행정부서 및 기관, 여성정책 및 도시공간정책 전문가, 시민, 사회단체활동가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
2. 여성친화도시 과제 발굴
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및 홍보
4. 여성친화도시 사업실적 평가
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추진에 관련된 사항

⑥ 시장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5조(여성친화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가 마을단위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 된 시민으로 이루어진 고양시 여성친화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마을, 공동주택 등 생활 불편사항 개선 건의를 위한 모니터링
2.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한 다양한 의견 제안
3. 마을 단위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 및 홍보

③ 시장은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포상)** 시장은 성평등정책에 노력한 시민, 공무원,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 제3장 성평등위원회

**제27조(성평등위원회)**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를 통한 성평등의 촉진, 복지증진, 건강가정 지원 등 성평등정책의 수립과 여성발전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련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고양시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8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성평등정책을 위한 정책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여성의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4.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건강가정 지원사업
6.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여성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적정 여부 및 성과분석

## 5. 그 밖에 기금운용과 성평등정책에 관련된 사항

**제29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성평등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예산, 성평등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과 성평등정책·분석평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시의원,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2.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4.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5.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1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3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3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성평등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7조(세부사항)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 제4장 여성발전기금

제38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시장은 성평등정책 추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양시 여성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9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2. 제19조에 따른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중 성평등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사업
3. 여성의 사회교육, 국내외 연수 및 국제협력사업의 지원
4. 성평등 실현과 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사항
5. 그 밖에 성평등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0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하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② 제39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은 기금운용 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의 범위에서 사용한다.

**제41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2조 (회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업무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 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3조 (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고양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 (지원기금의 회수 및 지원결정의 취소)**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 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 받은 경우
2.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지원목적 외에 기금을 사용한 경우
3. 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4. 기금의 지원 결정 후 사업추진단체가 해체되어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된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기금을 지원받은 자 또는 지원 결정된 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45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집행·결산 및 관리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제5장 보칙

**제46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사무는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양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서 구성된 고양시 여성발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고양시 성평등위원회로 보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고양시 여성발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 고양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

□ **제안자** : 왕성옥 · 이영휘 · 고은정 · 이윤승 · 현정원 · 권순영 · 오영숙 · 박시동 · 강영모 · 김영식 · 김경희 · 장제환 의원

## □ 제정이유

- 「대한민국헌법」과 「여성발전기본법」 그 밖의 성평등 관련법에 따라 고양시가 성평등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가정과 사회생활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서 모든 분야의 활동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모든 분야에서의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한 성평등 촉진, 모성(母性)의 보호, 성차별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해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며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함.

## □ 주요내용

- 성평등 정책 추진 등 목적을 정함. (제1조)
- 시장과 시민의 권리와 책무를 규정함. (제3조)
- 시장의 법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 수립과 그에 따른 시행에 대해 명시함. (제4조)
- 성평등정책 전담부서 설치, 책임관 지정, 성평등정책조정회의 및 실무회의 설치(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지역특화사업 추진 및 ‘여성친화협의체’와 ‘여성친화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 성평등 촉진을 위한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27조부터 제37조까지)
-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의 촉진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고양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제38조부터 제45조까지)

고양시의회 제18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 고 양 시 장 최 성 인

2014년 4월 11일

고양시조례 제1590호

### 고양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자녀가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는 교육 환경조성과 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고양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고양시에 있는 학교에서 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고양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고양·일산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학교폭력예방에 대하여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예방 교육 등)**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또는 단체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배

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 하기 위하여 고양시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유관기관 및 단체 간 상호 협력·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고양시의회 의원
2. 판사·검사·변호사
3. 교육장 및 경찰서장이 추천하는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 공무원
4.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 또는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람
6.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7.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과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협의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보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1조(비밀의 준수)** 협의회의 위원 및 협의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수당)** 협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2.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위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고양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정

□ 제안자 : 권순영 · 이영휘 · 고은정 · 이윤승 · 현정원 · 김영선 · 왕성욱 의원

## □ 제안이유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자녀가 안심하고 학교에 갈 수 있는 교육 환경조성과 학생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정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고양시장, 고양 교육지원청 교육장, 고양·일산경찰서장과 상호협약에 대한 내용(제4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제5조)
-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등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제7조)
- 협의회 운영과 비밀의 준수에 관한 사항(제10조)

고양시의회 제18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 고 양 시 장 최 성 인

2014년 4월 11일

고양시조례 제1591호

### 고양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

고양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시민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 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3.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라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성인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민법에 의한 성년을 말한다.

5. “소외계층 평생교육”이란 성인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의 평생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 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고양시 평생 교육 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

하여 평생 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시설·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
2. 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
3.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4. 소외계층 평생교육 사업
5.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

**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시장은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평생 교육진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양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평생교육 주관부서장, 고양시의회 의원,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관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 ⑤ 협의회는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그 밖의 관련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류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한다.

-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고양시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한다.
  - 1. 협의회 심의 이전에 미리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항
  - 2.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3. 평생학습 등에 관한 기관 간 실무적인 협조 사항

4.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사항과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③ 실무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시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과 관내 평생교육기관·단체·시설의 실무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⑤ 실무협의회의 위원 해촉, 회의 등은 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제11조(간사)**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을 두며, 협의회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실무협의회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3.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수당)**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고양시의회의 의원 및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학습관의 설치·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학습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조제2호에 정한 평생교육기관에 해당 시설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③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학습관의 기능)** ① 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 학습동아리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
6. 평생교육 상담에 관한 사항
7.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진흥 사항
8. 제15조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고양교육청 및 유관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단체와 공동 또는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수강료 징수 등)** ① 시장은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장애인, 미혼모, 성인 비문해자 또는 만 65세 이상자 대상 프로

그럼

2. 실업자 및 저소득층 대상 프로그램
3. 공무원 또는 자원봉사자 대상 프로그램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제17조(수강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3. 만 65세 이상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수강료 반환)** 수강생이 납부한 수강료 반환의 경우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9조를 준용한다.

**제1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평생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한 관련 경비가 목적 외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금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③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0조(포상 등)** 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단체·시설 및 개인을 발굴하여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에

게 수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시민의 평생교육 진흥과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p> <p><b>&lt;신 설&gt;</b></p> |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 진흥을 도모하고 .....<br/>.....<br/>.....<br/>..... 사항을 규정함을 .....<br/>.....</p> <p><b>제2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독 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 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p> <p>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p> <p>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p> <p>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p> <p>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p> <p>3. “평생교육사”란 법 제24조에 따라 교</p> |

| 현행                                                                                                                                                                                                                                                                                                                                    | 개정안                                                                                                                                                                                                                                                                                                                                                                                                                                                                                                                                                             |
|---------------------------------------------------------------------------------------------------------------------------------------------------------------------------------------------------------------------------------------------------------------------------------------------------------------------------------------|-----------------------------------------------------------------------------------------------------------------------------------------------------------------------------------------------------------------------------------------------------------------------------------------------------------------------------------------------------------------------------------------------------------------------------------------------------------------------------------------------------------------------------------------------------------------|
| <p>제2조(기본원칙)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lt;신설&gt;</p> <p>&lt;신설&gt;</p> <p>② 시 관내에 있는 평생교육 관련기관 등의 장은 시의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p> <p>제3조(운영비 등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와 학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p> <p>&lt;신설&gt;</p> | <p>육부장관으로부터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평생교육의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p> <p>4. “성인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민법에 의한 성년을 말한다.</p> <p>5. “소외계층 평생교육”이란 성인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의 평생교육을 말한다.</p> <p>제3조(시장의 책무) .....</p> <p>..... 질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고양시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p> <p>③ 시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p> <p>&lt;삭제&gt;</p> <p>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 .....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거나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기관·시설·단체에 대하여 .....</p> <p>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운영</p> |

| 현행                                                                                                                                                                                                                                                                                                                                                                                                                                                                                                                                                                                                                                                                    | 개정안                                                                                                                                                                                                                                                                                                                                                                                                                                                                                                                                                                                                                                                    |
|-----------------------------------------------------------------------------------------------------------------------------------------------------------------------------------------------------------------------------------------------------------------------------------------------------------------------------------------------------------------------------------------------------------------------------------------------------------------------------------------------------------------------------------------------------------------------------------------------------------------------------------------------------------------------|--------------------------------------------------------------------------------------------------------------------------------------------------------------------------------------------------------------------------------------------------------------------------------------------------------------------------------------------------------------------------------------------------------------------------------------------------------------------------------------------------------------------------------------------------------------------------------------------------------------------------------------------------------|
| <p>&lt;신설&gt;<br/>         &lt;신설&gt;<br/>         &lt;신설&gt;<br/>         &lt;신설&gt;</p> <p><b>제6조(평생교육협의회)</b> 평생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고 평생교육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고양시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p> <p><b>제7조(기능) (생략)</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생략)</li> <li>2. <u>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u></li> <li>3. 그 밖에 평생교육 시책에 대하여 시장이 <u>부의하는 사항</u></li> </ol> <p><b>제8조(구성) ①~② (생략)</b></p> <p>③ 위원은 평생교육 주관부서장, <u>시의회 의원</u>, 지역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관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p> <p>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u>연임할 수 있다</u>.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직위를 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p> <p>⑤ 협의회는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u>평생교육사의 양성 및 배치</u></li> <li>3. <u>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u></li> <li>4. <u>소외계층 평생교육 사업</u></li> <li>5.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등</li> </ol> <p><b>제5조(평생교육협의회) 시장은</b> .....</p> <p>.....</p> <p>.....</p> <p>.....</p> <p><b>제6조(기능) (현행과 같음)</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현행과 같음)</li> <li>2. <u>평생학습관(이하 “학습관”이라 한다) 운영</u> .....</li> <li>3. .... <u>회의에 부치는</u> .....</li> </ol> <p><b>제7조(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b></p> <p>③ ..... <u>고양시</u></p> <p>.....</p> <p>.....</p> <p>.....</p> <p>④ ..... <u>1회에 한하여 연임</u> .....</p> <p>.....</p> <p>.....</p> <p>.....</p> <p>⑤ .....</p> |

| 현행                                                                                                                                                                                              | 개정안                                                                                                                                                                                                                                                                                                                                                                                                                                                                                                                                                                                                                                                                                                                      |
|-------------------------------------------------------------------------------------------------------------------------------------------------------------------------------------------------|--------------------------------------------------------------------------------------------------------------------------------------------------------------------------------------------------------------------------------------------------------------------------------------------------------------------------------------------------------------------------------------------------------------------------------------------------------------------------------------------------------------------------------------------------------------------------------------------------------------------------------------------------------------------------------------------------------------------------|
| <p>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기타 관련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서류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⑥ (생략)</p> <p><u>제9조(의장 등의 직무) ①~② (생략)</u></p> <p><u>제10조(회의 등) ①~② (생략)</u></p> <p><u>&lt;신설&gt;</u></p> | <p>.....</p> <p><u>그 밖의</u> .....</p> <p>.....</p> <p>.....</p> <p>⑥ (현행과 같음)</p> <p><u>제8조(의장 등의 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u></p> <p><u>제9조(회의 등) ①~② (현행과 같음)</u></p> <p><u>제10조(실무협의회) ①</u>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고양시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p> <p><u>②</u>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조정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협의회 심의 이전에 미리 검토를 필요로 하는 사항</u></li> <li><u>2.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u></li> <li><u>3. 평생학습 등에 관한 기관 간 실무적인 협조 사항</u></li> <li><u>4.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에 관한 사항과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u></li> </ol> <p><u>③</u> 실무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평생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u>④</u> 위원은 시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과 관내 평생교육기관·단체·시설의 실무자,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p> |

| 현행                                                                                                                                                                                                                                                                                                                             | 개정안                                                                                                                                                                                                                                                                                                                                                                                                                                                                                                                                                                                                                |
|--------------------------------------------------------------------------------------------------------------------------------------------------------------------------------------------------------------------------------------------------------------------------------------------------------------------------------|--------------------------------------------------------------------------------------------------------------------------------------------------------------------------------------------------------------------------------------------------------------------------------------------------------------------------------------------------------------------------------------------------------------------------------------------------------------------------------------------------------------------------------------------------------------------------------------------------------------------|
| <p><u>&lt;신설&gt;</u></p> <p><u>제11조(수당 등)</u>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고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u>제4조(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 등)</u></p> <p>① 시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하여 평생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 시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p> | <p>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p> <p>⑤ 실무협의회의 위원해촉, 회의 등은 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p> <p><u>제11조(간사)</u> 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명을 두며, 협의회 간사는 평생학습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평생학습업무 담당팀장이 된다.</p> <p>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li> <li>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li> <li>3.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li> <li>4. 그 밖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li> </ol> <p><u>제12조(수당)</u> .....참석.....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 고양시의회의 의원 및 시 소속 .....</p> <p><u>제13조(학습관의 설치·운영 등)</u></p> <p>① .....제21조제4항..... 학습관을 ..... </p> <p><u>&lt;삭제&gt;</u></p> |

| 현행                                                                                                                                                                                                                                                                                                                                                                                                                                                                                                                  | 개정안                                                                                                                                                                                                                                                                                                                                                                                                                                                                                                                                                             |
|---------------------------------------------------------------------------------------------------------------------------------------------------------------------------------------------------------------------------------------------------------------------------------------------------------------------------------------------------------------------------------------------------------------------------------------------------------------------------------------------------------------------|-----------------------------------------------------------------------------------------------------------------------------------------------------------------------------------------------------------------------------------------------------------------------------------------------------------------------------------------------------------------------------------------------------------------------------------------------------------------------------------------------------------------------------------------------------------------|
| <p>할 수 있다.</p> <p>③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 시 「고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b>제5조(평생학습센터의 기능)</b> ①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 (생략)</li> <li>3.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li> <li>4. (생략)</li> <li>5.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사업</li> <li>6. 학습동아리 조직과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li> <li>7. (생략)</li> </ol> <p>&lt;신 설&gt;</p> <p>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양교육청 등 유관기</p> | <p>② ..... 학습관 .....<br/>.....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정한 평생교육 기관에 해당시설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③ 제3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p> <p><b>제14조(학습관의 기능)</b> ① 학습관은 .....<br/>.....</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2. (현행과 같음)</li> <li>3. .... 시설, 학습동아리의 .....</li> <li>4. (현행과 같음)</li> <li>5. ....에 대한 교육·훈련 .....</li> <li>6. 평생교육 상담 .....</li> <li>7. (현행과 같음)</li> <li>8. 제15조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li> <li>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② .....<br/>.....<br/>..... 및 .....</p> |

| 현행                                                                                                                                                                                                           | 개정안                                                                                                                                                                                                                                                                                                                                                                                                                                                                                                                                                       |
|--------------------------------------------------------------------------------------------------------------------------------------------------------------------------------------------------------------|-----------------------------------------------------------------------------------------------------------------------------------------------------------------------------------------------------------------------------------------------------------------------------------------------------------------------------------------------------------------------------------------------------------------------------------------------------------------------------------------------------------------------------------------------------------|
| <p>관 또는 민간단체와 공동 또는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lt;신설&gt;</p> <p>제12조(수강료 징수 등) ①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13조(수강료 감면) (생략)</p> <p>&lt;신설&gt;</p> <p>&lt;신설&gt;</p> | <p>평생교육시설:.....</p> <p>.....</p> <p>제15조(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① 시장은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6조(수강료 징수 등) ① ..... 학습관 .....<br/>.....</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7조(수강료 감면) (현행과 같음)</p> <p>제18조(수강료 반환) 수강생이 납부한 수강료 반환의 경우 「고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9조를 준용한다.</p> <p>제19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평생교육기관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한 관련 경비가 목적 외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금의 지급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p> |

| 현 행                                                     | 개 정 안                                                                                                                                                                                                                                                          |
|---------------------------------------------------------|----------------------------------------------------------------------------------------------------------------------------------------------------------------------------------------------------------------------------------------------------------------|
| <p><u>&lt;신 설&gt;</u></p> <p><u>제14조(시행규칙) (생략)</u></p> | <p>다.</p> <p>③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p> <p><u>제20조(포상 등) ①</u>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단체·시설 및 개인을 발굴하여 「고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p> <p>② 시장은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p> <p><u>제21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u></p> |

# 고양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

□ 제안자 : 장 제 환 · 선재길 · 이화우 의원

##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평생교육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이를 관리·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 평생교육의 정의, 성인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사항, 평생교육사의 배치, 평생교육실무협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동주민센터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평생교육진흥 기여자 포상에 대한 근거 마련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고양시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 □ 주요내용

- 조례 제명을 변경함.
  - 현행 : 고양시 평생교육 조례
  - 개정 : 고양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 성인 장애인 및 소외계층 평생교육, 평생교육기관 등의 정의를 명시하고 경비보조 및 지원 근거와 평생교육사의 배치를 신설함 (제2조, 제4조)
- 평생교육진흥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소속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평생 교육의 실시를 권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구체화함. (제3조)
- 평생학습센터의 명칭을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학습관 명칭

으로 변경함. (제6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 평생교육협의회 위원의 연임 규정을 1회에 한하여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함. (제7조)
- 효율적인 평생교육협의회 업무수행을 위해 사전 검토·조정 등을 다룰 평생교육실무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제10조)
-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간사를 두어 해당 사무를 처리 하도록 신설함. (제11조)
-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중 참석수당 미지급 대상을 고양시의회 의원 및 고양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수당 지급 근거 조례를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 (제12조)
-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시 직영운영의 경우 직원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은 필수 사항으로 조례에 명시할 사항이 아니므로 해당 항목을 삭제토록 하며, 위탁운영 시 위탁대상기관 위탁기간, 위탁연장 기간을 명확히 하여 위탁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신설함. (제13조)
-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과 평생교육 상담사업,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대한 평생학습관 기능을 강화함. (제14조)
- 동별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제공을 위해 동 평생학습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신설함. (제15조)
- 수강료 반환 규정을 신설함. (제18조)
- 평생교육기관·시설·단체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지도하고 감독하는 규정을 신설함. (제19조)
-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한 기관·단체·시설·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제21조)

고양시의회 제18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 고 양 시 장 최 성 인

2014년 4월 11일

고양시조례 제1592호

###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3항제1호 중 ‘추진위원회’를 ‘추진위원회 및 조합’으로 하고, 제6항과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⑦ 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제척 및 회피, 간사 및 서기, 회의록 작성 등은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6조 등을 준용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6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① 추진위

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시장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2.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이 취소된 경우

②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은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1. 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
2. 영 제22조에서 규정한 업무
3. 그 밖에 조합이 업무추진에 사용한 비용 등

③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은 지출내역서 및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야 하며, 제15조에 따른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④ 검증위원회는 항목별 사용비용 중 거래관행 및 사회통념에 비취 과다하게 산정된 비용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쳐 조정·결정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검증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보조금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구성원 대표로 선정된 자 또는 그에 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이하 "대표선정자"라 한다)가 신청하며, 대표선정자는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인가 등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

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8호서식)와 증빙자료
2. 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채권자, 주소, 연락처 포함)와 증빙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선정자, 지급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⑦ 시장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내용(제6항제1호 및 제2호)을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에게 공고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⑧ 시장은 제7항에 따른 공고, 주민열람 및 통지를 완료한 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대표선정자, 해산된 추진위원회 및 조합 구성원 위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⑨ 대표선정자는 제8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6항제3호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보조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부터 10일 이후에 신청된 계좌번호로 입금한다.

⑩ 시장은 제9항에 따라 보조금을 보조하는 경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의4제10항에 따라 도지사가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신청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사용비용 보조 기준 고시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청 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라 조합 설립인가 취소 고시된 경우에는 이 조례 제16조제6항 신청의 기산일인 설립인가 취소 고시일을 이 조례 시행일로 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은 부칙<법률 제11293호, 2012.2.1.> 제2조제3항의 기간까지로 한다.



##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

| 표준항목            | 세부항목 | 사용비용금액 | 비고 | 신청안내                                                                                           |
|-----------------|------|--------|----|------------------------------------------------------------------------------------------------|
| 정비사업전문관리<br>용역비 |      |        |    | 정비사업전문관리<br>용역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설계 용역비          |      |        |    | 건축설계 위한 설계용역<br>회사에 지급한 용역비                                                                    |
|                 |      |        |    |                                                                                                |
|                 |      |        |    |                                                                                                |
|                 |      |        |    |                                                                                                |
| 기 타             |      |        |    | 감정평가수수료,<br>정비계획,<br>세무·회계용역비,<br>안전진단비, 기타<br>외주용역비,외부회계감<br>사비, 주민총회,<br>추진위원회,인건비,<br>운영비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b>제15조(추진위원회사용비용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b> ① 시장은 <u>추진위원회</u>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u>추진위원회</u>사용비용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생략)</p> <p>1. 사용비용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와 <u>추진위원회</u>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로 하여금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u>추진위원회</u>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해 설명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2. (생략)</p> <p>④ ~ ⑤ (생략)</p> <p>&lt;신설&gt;</p> <p>&lt;신설&gt;</p> | <p><b>제15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b> ① 시장은 <u>추진위원회</u> 및 <u>조합</u>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u>추진위원회</u> 및 <u>조합</u>사용비용 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1. -----<br/>-----<br/>-----<br/>-----<br/><u>추진위원회 및 조합</u>-----<br/>-----<br/>-----<br/>-----</p> <p>2. (현행과 같음)</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p>⑥ <u>당연직</u>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u>위촉직</u>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u>보궐위원</u>의 임기는 <u>전임위원</u>의 잔여임기로 한다.</p> <p>⑦ <u>위원</u>의 <u>결격사유</u> 및 해촉, 제척 및 회피, 간사 및 서기, 회의록 작성 등은 제29조, 제31조, 제32조, 제36조 등을 준용한다.</p> |

| 현행                                                                                                                                                                                                                                                                                                                                                                                                                                                                                  | 개정안                                                                                                                                                                                                                                                                                                                                                                                                                                                                                                                                                                                                                                                                                             |
|-------------------------------------------------------------------------------------------------------------------------------------------------------------------------------------------------------------------------------------------------------------------------------------------------------------------------------------------------------------------------------------------------------------------------------------------------------------------------------------|-------------------------------------------------------------------------------------------------------------------------------------------------------------------------------------------------------------------------------------------------------------------------------------------------------------------------------------------------------------------------------------------------------------------------------------------------------------------------------------------------------------------------------------------------------------------------------------------------------------------------------------------------------------------------------------------------|
| <p><u>제16조(추진위원회 승인취소에 따른 비용 보조) ① 영 제27조의3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란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법 제1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말한다.</u></p> <p><u>② 법 제16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추진위원회에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보조 신청을 할 경우 시장은 제15조에 의한 검증위원회에서 검증 절차를 거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u></p> <p><u>③ 보조금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의 위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이하 "대표선정자"라 한다)가 신청하며, 대표선정자는 법 제16조의2 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u></p> | <p><u>제16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①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시장이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u></li> <li><u>2. 법 제1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이 취소된 경우</u></li> </ol> <p><u>②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은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법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u></li> <li><u>2. 영 제22조에서 규정한 업무</u></li> <li><u>3. 그 밖에 조합이 업무추진에 사용한 비용 등</u></li> </ol> <p><u>③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은 지출내역서 및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야 하며, 제15조에 따른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u></p> |

| 현행                                                                                                                                                                                                                                                                                                                                                                                                                                                                                                  | 개정안                                                                                                                                                                                                                                                                                                                                                                                                       |
|-----------------------------------------------------------------------------------------------------------------------------------------------------------------------------------------------------------------------------------------------------------------------------------------------------------------------------------------------------------------------------------------------------------------------------------------------------------------------------------------------------|-----------------------------------------------------------------------------------------------------------------------------------------------------------------------------------------------------------------------------------------------------------------------------------------------------------------------------------------------------------------------------------------------------------|
| <p>1. <u>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8호서식)와 증빙자료</u></p> <p>2. <u>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채권자, 주소, 연락처 포함)와 증빙자료</u></p> <p>3. <u>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선정자, 지급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u></p> <p>④ <u>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내용(제3항제1호 및 제2호)을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이해관계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u></p> <p>⑤ <u>시장은 제4항에 따른 공고 및 통지를 완료한 후 제2항에 따라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대표선정자, 해산된 추진위원회 위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u></p> | <p>④ <u>검증위원회는 항목별 사용비용 중 거래관행 및 사회통념에 비취 과다하게 산정된 비용에 대해서는 검증을 거쳐 조정·결정할 수 있다.</u></p> <p>⑤ <u>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검증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u></p> <p>⑥ <u>보조금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구성원 대표로 선정된 자 또는 그에 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이하 "대표선정자"라 한다)가 신청하며, 대표선정자는 법 제16조의2 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 및 조합 설립인가 등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u></p> |

| 현행                                                                                                                                                                               | 개정안                                                                                                                                                                                                                                                                                                                                                                                                                                                                                                                                                                                                                                                                                                                                      |
|----------------------------------------------------------------------------------------------------------------------------------------------------------------------------------|------------------------------------------------------------------------------------------------------------------------------------------------------------------------------------------------------------------------------------------------------------------------------------------------------------------------------------------------------------------------------------------------------------------------------------------------------------------------------------------------------------------------------------------------------------------------------------------------------------------------------------------------------------------------------------------------------------------------------------------|
| <p>⑥ 대표선정자는 제5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3항제3호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보조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부터 10일 이후에 신청된 계좌번호로 입금한다.</p> |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8호서식)와 증빙자료</li> <li>2. 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채권자, 주소, 연락처 포함)와 증빙자료</li> <li>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선정자, 지급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li> </ol> <p>⑦ 시장은 제6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내용(제6항제1호 및 제2호)을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주민 열람 및 의견청취를 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⑧ 시장은 제7항에 따른 공고, 주민열람 및 통지를 완료한 후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을 결정하고, 대표선정자, 해산된 추진위원회 및 조합 구성원 위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p> <p>⑨ 대표선정자는 제8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6항제3호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보조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부터 10일 이후에 신청된 계좌번호로 입금한다.</p> |

# 현행

## 개 정 안

⑩ 시장은 제9항에 따라 보조금을 보조하는 경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11조의4제10항에 따라 도시사가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신청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                               |      |        |  |          |
|-------------------------------|------|--------|--|----------|
| <b>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b>     |      |        |  | 처리기<br>한 |
|                               |      |        |  | 60일      |
| 승인 취소 추진위원회(명칭)               |      |        |  | 취소일자     |
| 신청인<br><br>(추진위원 중<br>대표 신청자) | 성 명  |        |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 ) |  |          |
|                               | 신청금액 | (백만원)  |  |          |

1. 추진위원회 일반 현황

|               |     |                                  |         |
|---------------|-----|----------------------------------|---------|
| 구역 위치         |     |                                  |         |
| 구역 면적         |     | <i>m<sup>2</sup></i>             | 구역 지정일자 |
| 추진위원회<br>승인일자 |     | 토지등소유자 수                         |         |
| 해산<br>신청<br>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 주 소 | (전화: )                           |         |
| 해산<br>신청동의율   |     | % (동의자 수/토지등소유자,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         |

2. 사용비용 신청내역

| 업무명 | 사용비용 금액 | 업무명 | 사용비용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교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  
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교 양 시 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1.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8호서식)와 증빙자료<br>2. 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채권자, 주주, 연락처 포함)와 증빙자료<br>3.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신청자, 지급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                                 |  |  |  |          |
|---------------------------------|--|--|--|----------|
| <b>추진위원회의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b> |  |  |  | 처리기<br>한 |
|                                 |  |  |  | 60일      |

|                         |      |        |  |
|-------------------------|------|--------|--|
| 승인 취소 <u>추진위원회</u> (명칭) |      | 취소일자   |  |
| 신청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추진위원 중<br>대표 신청자)      | 주 소  | (전화: ) |  |
|                         | 신청금액 | (백만원)  |  |

**1. 추진위원회의 일반 현황**

|                |                                  |          |  |
|----------------|----------------------------------|----------|--|
| 구역 위치          |                                  |          |  |
| 구역 면적          | <i>m<sup>2</sup></i>             | 구역 지정일자  |  |
| 추진위원회의<br>승인일자 |                                  | 토지등소유자 수 |  |
| 해산<br>신청<br>인  | 성 명                              | 생년월일     |  |
|                | 주 소                              | (전화: )   |  |
| 해산<br>신청동의율    | % (동의자 수/토지등소유자,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          |  |

**2. 사용비용 신청내역**

| 업무명 | 사용비용 금액 | 업무명 | 사용비용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  
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고 양 시 장** 귀하

|      |                                                                                                                                                              |
|------|--------------------------------------------------------------------------------------------------------------------------------------------------------------|
| 구비서류 | 1. <u>추진위원회</u>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별지 제8호서식)와 증빙자료<br>2. 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채권자, 주주, 연락처 포함)와 증빙자료<br>3. <u>추진위원회</u> 사용비용 보조금 관련 의결 및 의사록(대표신청자, 지급제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m<sup>2</sup>(재활용품)]

## 현 행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

| 표준항목            | 세부항목 | 사용비용금액 | 비고 | 신청안내                                                                                                                 |
|-----------------|------|--------|----|----------------------------------------------------------------------------------------------------------------------|
| 정비사업전문관리<br>용역비 |      |        |    | 정비사업전<br>문관리<br>용역비                                                                                                  |
|                 |      |        |    |                                                                                                                      |
|                 |      |        |    |                                                                                                                      |
|                 |      |        |    |                                                                                                                      |
| 설계 용역비          |      |        |    | 건축설계<br>위한<br>설계용역<br>회사에<br>지급한<br>용역비                                                                              |
|                 |      |        |    |                                                                                                                      |
|                 |      |        |    |                                                                                                                      |
|                 |      |        |    |                                                                                                                      |
| 기 타             |      |        |    | 감정평가수<br>수료,<br>정비계획,<br>세무·회계용<br>역비,<br>안전진단비,<br>기타<br>외주용역비,<br>외부회계감<br>사비,<br>주민총회,<br>추진위원회,<br>인건비,<br>운영비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개 정 안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

| 표준항목            | 세부항목 | 사용비용금액 | 비고 | 신청안내                                                                                                                 |
|-----------------|------|--------|----|----------------------------------------------------------------------------------------------------------------------|
| 정비사업전문관리<br>용역비 |      |        |    | 정비사업전<br>문관리<br>용역비                                                                                                  |
|                 |      |        |    |                                                                                                                      |
|                 |      |        |    |                                                                                                                      |
|                 |      |        |    |                                                                                                                      |
| 설계 용역비          |      |        |    | 건축설계<br>위한<br>설계용역<br>회사에<br>지급한<br>용역비                                                                              |
|                 |      |        |    |                                                                                                                      |
|                 |      |        |    |                                                                                                                      |
|                 |      |        |    |                                                                                                                      |
| 기 타             |      |        |    | 감정평가수<br>수료,<br>정비계획,<br>세무·회계용<br>역비,<br>안전진단비,<br>기타<br>외주용역비,<br>외부회계감<br>사비,<br>주민총회,<br>추진위원회,<br>인건비,<br>운영비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고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 제 출 자 : 박시동의원

## □ 개 정 이 유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에 관한 제도는 있었으나, 그동안 조례의 불비로 인해 ‘조합 사용비용’ 보조에 관한 제도는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었음. 이로 인해 조합과 추진위원회가 뚜렷한 이유 없이 제도적 차별을 받고 있는 문제점이 대두됨.
- 이에 경기도 및 인근 시에서 모두 조례를 개정하고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 제도를 마련한 바, 뒤늦게나마 금번에 우리 시에 관련 제도를 도입하여 형평성 있게 보조하고자 함.

## □ 주 요 내 용

- 조합 사용비용 검증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함 (제15조)
-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을 규정함 (제16조)
-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에 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7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제16조제5항)
- 시장이 사용비용을 보조할 경우, 도지사에게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도록 함. (제16조제10항)

**고양시 고시 제2014- 109호**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8호)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

1. 고양시 고시 제2013-261호(2013.8.29.)로 실시계획인가 된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381-5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8호) 사업에 대하여 기존 송전선로 및 철탑 철거공사 소요기간 연장 등의 사유로 실시계획(변경)인가 신청되어,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시행령 10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2014년 4월 11일

고 양 시 장

**1. 실시계획(변경)인가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변경없음)

- 고양시 덕양구 오금동 381-5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변경없음)

- 종류: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8호)사업
- 명칭: 345kV 신중부송전선로 T/L No.9 철탑설치공사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없음)

○ 수도공급설비

| 구 분      | 도면<br>표시번호 | 시설명        | 위치                           | 면적(㎡) | 최 초<br>결정일                        | 비고                 |
|----------|------------|------------|------------------------------|-------|-----------------------------------|--------------------|
| 결정<br>사항 | 8          | 전기<br>공급설비 | 고양시 덕양구<br>오금동<br>381-5번지 일원 | 4,136 | 고양시 고시<br>제2009-304호<br>'09-11-12 | 조경수목<br>식재부지<br>추가 |
| 금회<br>시행 | 8          | 전기<br>공급설비 | 고양시 덕양구<br>오금동<br>381-5번지 일원 | 4,136 | 고양시 고시<br>제2009-304호<br>'09-11-12 |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변경없음)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654-1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정연민)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초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12개월
- 변경 : 실시계획인가일 ~ 2014. 10.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 해당없음

사.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관계인 주소, 성명: “바”항과 동일

**2. 관계도면 : “계재생략”**

## 고양시 공고 제2014-567호

### 도시계획시설(경부고속철도 서울차량기지·정비창 시설 내 직장어린이집 건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고양시 고시 제2013-368호(2013. 12. 19.)로 도시계획시설 사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변경)인가하여 시행한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3-1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철도:경부고속철도 서울차량기지·정비창 시설 내 직장어린이집 건설)사업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 04. 11.

고 양 시 장

#### ○ 공사완료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 3-1번지 일원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철도) 사업

- 명 칭 : 경부고속철도 서울차량기지·정비창 시설 내 직장어린이집 건설

#### 다. 사업의 면적 및 토지 규모

| 구분   | 규모(㎡)        | 건축면적(㎡)    | 건축연면적(㎡)   | 비고   |
|------|--------------|------------|------------|------|
| 당초   | 1,314,446.00 | 190,798.55 | 204,995.47 | 30동  |
| 금회시행 | 1,980.00     | 443.14     | 690.89     | 신축1동 |
| 계    |              | 191,241.69 | 205,686.36 | 31동  |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번지(소제동)

○ 성 명 : 한국철도공사 대표 최연혜

#### 마. 사업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14. 3. 31.

고양시 공고 제2014 - 568호

도시 계획시설(소로1-165호선)사업 공사완료 공고

고양시 고시 제2008-84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에 따른 고시하고 시행한 일산동구 문봉동 190-64번지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소로1-165호선)사업에 대하여 공사가 완료되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4. 11.  
고 양 시 장

○ 공사완료 내용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고양시 일산동구 문봉동 190-64번지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문봉~설문간 도로)

- 명 칭 : 소로1-165호선

다. 사업의 면적 및 토지 규모

| 구분              | 도시 계획시설명  | 폭원<br>(m) | 연장<br>(m) | 면적(㎡)  | 위 치                  | 비고 |
|-----------------|-----------|-----------|-----------|--------|----------------------|----|
| 도시 계획시설<br>(도로) | 소로1-165호선 | 10        | 2,009     | 27,903 | 일산구 문봉동<br>190-64 일원 |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10(주교동 600)

○ 성 명 : 고양시장(일산동구 건설과)

마. 사업의 착수 및 준공일

- 실시계획인가일 ~ 2014. 04.

# 공 고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일상적인 교통생활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안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2차 고양시 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양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1일

## 고 양 시 장

### 1. 공고 개요

- 가. 계 획 명 : 제2차 고양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 나. 열람장소 : 고양시 교통정책과(☎031-8075-3832)

### 2. 계획범위

- 가. 기본계획기간 : 2012 ~ 2016년(5년)
  - 목표년도 : 2016년
  - 정책 목표설정/투자계획 : 2012 ~ 2016년
- 나. 공간적 범위 : 고양시 행정구역
- 다. 내용적범위
  - 교통시설 : 도로 및 철도시설과 그 부속 시설
  - 교통수단 : 자동차, 도시철도차량, 자전거 등
  - 운송사업자 : 고양시의 관리·감독을 받는 운송사업자의 주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의 여객 또는 화물자동차운수회사
  - 제도 : 고양시가 추천하는 각종 정책, 제도, 계획 등
  - 교통운영체계 : ITS, 교통관제, BIS 등
  - 투자소요비용 및 재원조달 방안. 끝.